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3-6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조례 제1002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으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과 과제 수행이 일상화되고 있으나, 수행평가 과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생 간 평가의 공정성 훼손, 학습 성취도의 왜곡, 교사의 평가 신뢰도 저하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나. 이에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 항목 추가(안 제9조제6호)